

의안번호

제709호

-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9. 9. 2(수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9. 9. 7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9. 9. 14(월)

2. 개정이유

-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1일 최소 청소회수를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
⇒ 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조~제3조, 제5조)

- 목적, 정의, 적용의 범위, 설치기준

다. 공중화장실 1일 최소 청소 회수 조정(안 제9조)

- 1일 3회 이상 → 1일 2회 이상

4. 근거법규

- 가.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

다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에서 “간이화장실”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“간이화장실”을 추가코자 하며
- 조례 제3조(적용범위) 중 관관진흥법의 관광지 지정 관련 조문 “제50조제1항 및 제3항” 이 “제52조제1항”으로 변경 되었으며, 조성계획 수립 관련 조문 “제52조제1항”이 “제54조제1항”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과
- 공중화장실의 청소 회수를 1일 3회 이상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수정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09.9.10] [법률 제9780호, 2009.6.9, 타법개정] 현재시행법령확인

[행정안전부](#) (지역활성화과), 02-2100-2814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6.4.28>

1. "공중화장실"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.
2. "개방화장실"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[제9조제2항](#)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.
3. "이동화장실"이라 함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.
- 3의2. "간이화장실"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.
4. "유료화장실"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·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.
5. "공공기관"이라 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(이하 "공중화장실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 <개정 2004.10.22, 2005.3.31, 2006.4.28, 2008.3.21, 2009.4.1, 2009.6.9>

1. 「[자연공원법](#)」 [제2조제1호](#)에 따른 자연공원
2. 「[관광진흥법](#)」 [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](#)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
3. 「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(#)」 [제2조제5호](#)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4. 「[유통산업발전법](#)」 [제2조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](#)에 따른 대규모점포·임시시장·상점가·전문상가단지
5. 「[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](#)」 [제2조제3호](#)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
6. 「[도로법](#)」 [제2조제4호](#)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
7. 「[철도산업발전 기본법](#)」 [제3조제1호](#)에 따른 철도의 역
8. 「[도시철도법](#)」 [제3조제1호](#)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
9. 「[항만법](#)」 [제2조제1호](#)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
10. 「[유선 및 도선사업법](#)」 [제2조제3호](#)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
11. 「[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](#)」 [제10조제4항](#)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
- 11의2. 「[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](#)」 [제3조](#)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을 하는 충전소
12. 「[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](#)」 [제2조제1호](#)에 따른 체육시설

- 13. 「항공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
- 14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
- 15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
- 16.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

관광진흥법

연혁 제52조 (관광지의 지정 등)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(이하 "관광지등"이라 한다)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지정한다. 다만,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.
<개정 2008.2.29, 2008.6.5, 2009.3.25>

②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(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「국토이용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)으로 결정·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7.7.19>

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7.7.19>

⑤시·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,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7.19>

연혁 제53조 (조사·측량 실시) ①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7.7.19>

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.

연혁 제54조 (조성계획의 수립 등)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(이하 "관광단지개발자"라 한다)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